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5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유동수・박민규・김교흥

박홍배 · 김남근 · 강준현

전현희 · 서영교 · 윤준병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 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 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 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 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 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 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

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 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5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53조제1항 중 "住所 또는"을 "주소 또는 연락처나"로, "住所"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한다.

제363조제1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를 "서면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소"를 "주소 및 연락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주주의 동의를 받아"를 "서면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2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52條(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第352條(株主名簿의 記載事項) ①
주식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	
簿에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	
야 한다.	
1. 株主의 姓名과 住所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
	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u>말한다. 이하 같다)</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생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	<u><삭 제></u>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	
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第353條(株主名簿의 效力) ① 株	第353條(株主名簿의 效力) ①
主 또는 質權者에 對한 會社의	
通知 또는 催告는 株主名簿에	
記載한 <u>住所 또는</u> 그 者로부터	<u>주소 또는 연락처나</u>
會社에 通知한 <u>住所</u> 로 하면 된	<u>주소</u>
다.	또는 연락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u>서</u> 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 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 의 <u>주소</u>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 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 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u>서면</u>
<u> 또는</u>
<u>주소 및 연</u>
<u>락처</u>
② (현행과 같음)
③
<u>서면 또는</u>
④ ~ ⑦ (현행과 같음)